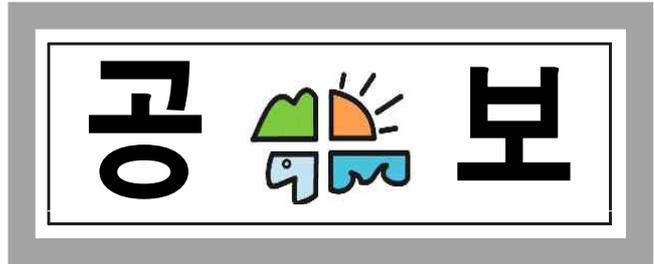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965호 2015년 11월 27일(금)

규 칙

-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3

고 시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고시(변경) 12

공 고

- 보상계획 공고(동명4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5
- 보상계획 공고(노학2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1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6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415, FAX : 639-2106)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2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340호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 중 “3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상위법에서 정한 최저금액으로 정하고자 함.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2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341호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람"이란 도서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도서 등을 보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도서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도서 등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퇴관"이란 도서 열람을 마치고 도서관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서관 이용 및 준수사항) ① 도서의 열람은 도서가 갖추어진 장소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판단될 경우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출받지 아니한 자료의 관외 유출 행위

2. 자료, 비품 등 시설물 훼손 행위
 3.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매우 문란하게 하는 행위
- ④ 시장은 열람자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2장 도서관 관리 운영

제4조(회원자격) 속초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속초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직장인
3.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 시에 거소를 둔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등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다만, 보호자와 동행한 미성년자의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사용할 수 있다.)
 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1부
 3.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학증명서 1부
 4.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필증 및 외국인등록증명서 1부
- ② 제1항의 신청자는 조례 제29조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자격 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 즉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 및 직장·학교의 이동 등으로 탈퇴 요청한 사람
2. 자료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변상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상 하지 않은 사람. 다만, 시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상일을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3. 대출도서를 1년 이상 무단 연체한 사람

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회원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자료대출) ①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연구·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목적의 경우 요구기관의 사전 공문에 의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원에 한정하여 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④ 대출권수는 1회 3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 진흥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기간과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재 대출) 대출기간 중 다른 예약자가 없을 때에는 그 도서를 반납 후 재 대출 할 수 있다.

제9조(대출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대출은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대출 연체 시에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이 제한되며, 3회 이상 연체 시에는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서관의 자료·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변상 의무가 발생할 경우 변상 결정된 날부터 변상 완료일까지 대출자격이 정지된다.

④ 도서관 운영의 공공성·공익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출한 자료에 대하여 반납기한 전이라도 그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 받은 사람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상호대차 및 무인예약 대출) ① 시장은 도서관 상호 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대출 및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서관에서 회원이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무인예약 대출 반납 기를 통해서 대출 및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자료 관리

제11조(자료선정 기준) ① 자료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보요구와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자 희망도서, 추천도서, 개정판 도서 등 최신요구 충족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한다. 단, 이용자 희망 자료가 도서관의 자료구성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③ 도서관 별 특성 및 분야별 균형성을 고려하여 장서를 선정한다.

④ 장애인들에게 정보 및 지식전달을 위한 장애인 관련 자료를 일반자료와 분리하여 구입·선정한다.

⑤ 정보도서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디지털 자료를 확보한다.

⑥ 자료의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 및 파손·훼손된 도서는 추가할 수 있다.

⑦ 어린이 도서의 선정은 어린이 교육과 정서에 끼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정한다.

⑧ 간행물은 교양 및 전문성, 분야별 이용자의 구독경향, 구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⑨ 도서관 자료구성 목적에 어긋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문제집, 수험서, 중고생 참고서, 시리즈 및 전집류
2. 판타지, 로맨스, 선정적인 자료, 무협지
3. 출판된 지 5년 이상 된 자료(컴퓨터, 과학, 신학문 분야는 2년)
4. 고가도서(10만 원 이상), 영리·정치목적 자료, 미풍양속 및 정서 등에 문제

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자료

5. 그 밖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자료

제12조(기증자료) ① 기증받은 자료는 도서관 자료로서의 이용가치,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등록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등록에서 제외한다.

1. 과도한 복권도서, 48쪽 미만 자료
2. 장서로서의 가치가 없는 자료, 유해자료
3. 기초 자치단체 통계자료(광역자치단체 통계자료는 등록)
4. 단기정보, 일상적인 내용으로 발간된 자료(정부간행물 포함)

② 등록 제외된 자료는 행사에 활용하거나, 타 도서관이나 복지기관 등에 기증할 수 있다.

제13조(자료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손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일간지·잡지·논문 등의 간행물의 폐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나 훼손 등 자료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폐기한다.
2. 주요 일간지 및 잡지는 1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3. 훼손이 심한 간행물은 자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관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시장의 결재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관기간이 경과된 자료를 행사에 활용하거나, 다른 도서관이나 복지기관 등에 기증할 수 있다.

제4장 부대시설 사용

제14조(디지털 자료실 사용시간) ① 1인 정보검색 PC 사용은 1일 2시간 이내, 노트북 사용은 1일 4시간 이내, DVD 상영은 1일 1회로 한다.

② 디지털 자료실이 교육장소로 활용될 경우에는 교육시간 동안 일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용자는 컴퓨터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 할 수 있다.

1. 컴퓨터를 채팅, 게임 등의 오락용으로 사용하거나, 음식물 반입 등으로 2회 이상 지적 된 사람
2.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

제15조(사물함 사용신청) ① 사용자격은 도서관 회원으로 한다.

② 사용기간은 1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 희망자는 기간연장 만료일 일주일 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가. 하나의 회원증으로 속초시 시립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도서서비스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개인 식별,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나. 속초시 시립도서관은 통합회원제(회원정보 및 대출정보공유)로 운영되며, 도서관 회원가입 시 가입도서관에 개인정보 수집 후 속초시 시립도서관 3개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가. 필수항목 :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자택전화), 자택주소, 사진
- 나. 선택항목 : 사용자ID, 비밀번호, 가족ID, E-Mail, 메일수신여부, SMS수신여부, 자택우편번호, 근무지 우편번호, 근무지 주소, 근무지 전화, 근무처, 부서명, 학교명, 학년, 반, 번호, 제2연락처
- 다. 사용 중 생성 항목 : 대출자번호, 회원증분실여부, 회원증발급횟수 및 이력, 성별, 생일, 실명인증코드, 관리구분, 소속, 직급, 회원구분, 자료실, 우편발송지역, 회원상태, 등록일자, 수정일자, 제적일자, 대출정지일, 대출정지회원사유, 현재대출책수, 현재연체책수, 총연체료, 누적연체횟수, 누적연체일, 책두레 신청제한일, 책두레 복귀(만료)횟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가.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나. 보존기간 : 탈퇴 의사 후 즉시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위와 같이 속초시 시립도서관 도서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 합니다.

담당자 확인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속 초 시 장 귀하

도 서 대 출 회 원 증(제5조 관련)

(앞 면)

<p>도 서 대 출 회 원 증</p> <p>성 명 : ○ ○ ○</p> <p>속초시 시립도서관</p>	 <p>(바코드)</p>	<p>5.5 cm</p>
<p>8.5cm</p>		

(뒷 면)

<p>이 용 안 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대출증은 대출시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대출권수 및 기간 : 1회 3권 14일간(연장불가) 4. 도서반납 연체시 연체일수만큼 대출 정지됩니다. 5. 대출도서 분실 및 훼손시 동일도서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6. 휴관일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도서관 :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 영랑, 풀이음 작은도서관 : 매주 화요일 및 법정공휴일 7. 거주지 변동, 회원증 분실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시립도서관 : 033)639-3720 영랑작은도서관 : 033)631-3321 풀이음작은도서관 : 033)636-1484</p> <p style="text-align: center;">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p>

◇ 개정이유

속초시립도서관 개관과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관 이용 및 준수사항, 회원 및 자료 대출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고시(변경)

강원도 고시 제2015-442호 『속초시 수도시설(일부) 폐지인가 고시』에 의거 가마소 수도시설, 노학양수장, 노학암반관정이 폐지됨에 따라,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변경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 월 27일

속 초 시 장

1. 지역·지구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2. 폐지대상 수도시설 현황

1) 취수시설의 명칭

- 가. 가마소 상수도(취·정수장) 시설
- 나. 노학 양수장 시설
- 다. 노학 암반관정 시설

2) 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시 설 명		처리용량 (톤/일)	위치	비고
가마소 상수도	취수장	5,000	노학동 1265	
	정수장	5,000	노학동 1000-142	
노학양수장		4,000	노학동 1159	
노학암반집수정		3,000	노학동 365-22	
합 계		12,000		

3) 취수시설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취수시설 설치자 : 속초시장(상수도사업소장)

나. 주소 : 속초시 떡밭재로 181 (조양동) 상수도사업소

4) 그 밖에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지하수법에 의거 폐공조치 이행

나. 관련시설물 : 노학양수장 및 노학암반관정

3.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대상지역 : 속초시 노학동, 교동

○ 해제면적 : 감 7,357,739m² (감 10.4%)

(당초) 70,515,523m² (제한지역 51,128,735 , 승인지역 19,386,788)

(변경) 63,157,784m² (제한지역 43,780,273 , 승인지역 19,377,511)

○ 지형도면 변경 지역 : 속초시 교동, 노학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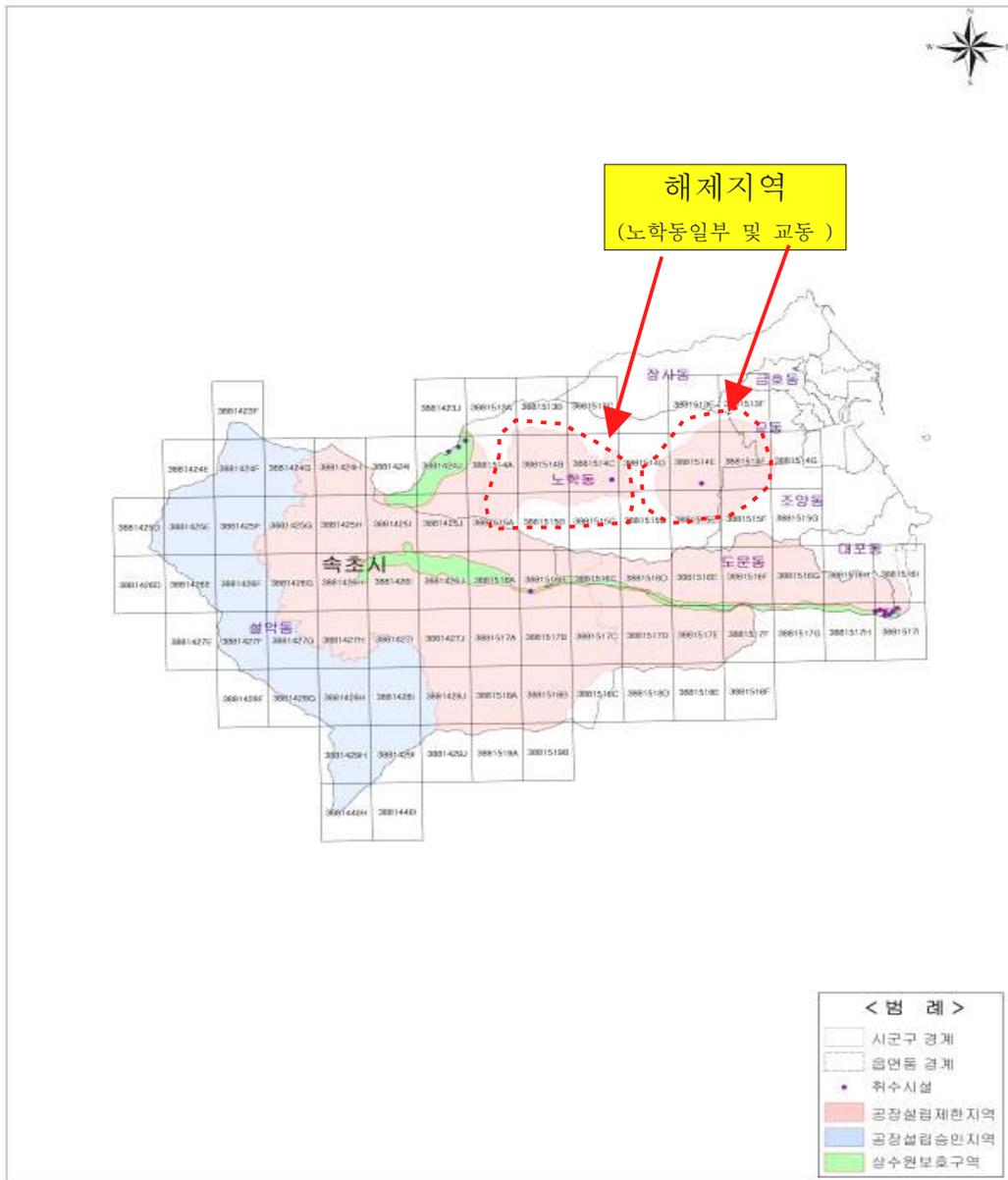
○ 세부내역

해당동	공장설립제한지역(km ²)	공장설립승인지역(km ²)	계(km ²)	비고
합 계	43.78	19.37	63.15	
교 동	0	0	0	변경(축소)
노학동	2.41	0.00	2.41	변경(축소)
대포동	0.22	0.00	0.22	변경없음
도문동			7.44	변경없음
설악동			52.1	변경없음
조양동			0.98	변경없음

3. 관계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속초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4. 속초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구역 (변경) 도면



보 상 계 획 공 고

속초시에서 시행하는 「동명4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7일

속 초 시 장

1. 사업시행자 : 속초시장
2. 사업명 : 동명4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 사업개요
 - 위치 : 속초시 동명동 1-113번지 일원(등대전망대 동·남측)
 - 사업내용 : 낙석방지울타리 54경간, 낙석방지망 1,884㎡, 낙석방지옹벽 226m, 이완암제거 33.3㎡, 포장 3a 등
4.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 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와 같음
5.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5. 11. 27 ~ 2015. 12. 12
6. 열람 및 손실보상협의장소
속초시 안전방재과 방재팀 (☎ 033-639-2403)
7. 보상시기 및 절차 : 2016. 1월 ~ 2016년 2월 보상협의 예정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추후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8.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의거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단, 같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 → (협의불성립시) 공탁

9. 본 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기타 보상업무 관련 문의는 속초시 안전방재과 방재팀(☎ 033-639-240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 신 청 서

1. 제 목	동명4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 . . .</p> <p>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속초시장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명:동명4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단위:M2)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편입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권리
1	동명동	1-116	대지	202	202	잡종지	이 미 속	강원도 속초시 만천7길 33-1(교동)			
2-1			유원지	362	지분 362분의 182	대지	김 광 석	강원도 속초시 응골길 56-101(노학동)			
2-2					지분 362분의 90	대지	고 장 주	강원도 속초시 법대로 13-2(동명동)			
3	영랑동	1-11	대지	89	89	대지	이 미 속	강원도 속초시 만천7길 33-1(교동)			

공사명:동명4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유 권 이외의권리
1	영랑해안길 47 (영랑동)	건축물		86.90 M2			강원도 속초시 응골길 56-101(노학동)			
		건축물		55.28 M2						
		건축물		3.10 M2						
		건축물		12.53 M2						
		가 추		8.30 M2						
		난 간		13.20 M						
		난 간		4.40 M						
		계 단		1 식						
		담 장		4.6 M						
		담 장		12 M						
		바닥포 장		1 식						
		상수도		1 식						
2	영랑해안길 47 (영랑동)	건축물		65.21 M2			강원도 속초시 법대로 13-2(동명동)			
		건축물		35.46 M2						
		바닥포 장		1 식						
		상수도		1 식						
		정화조		1 식						
3	영랑해안길 47 (영랑동)	건축물		72.45 M2				속초 시 영랑 해안 길 47(영 랑동)	영업권 (그린레포츠)	
		건축물		42.09 M2						
		건축물		45.03 M2						
		건축물		31.63 M2						

		건축물		1.04 M2					
		건축물		1.83 M2					
		가추		2.43 M2					
		가추		6.40 M2					
		계단		1 식					
		난간		5.10 M					
		간판		1 EA					
		물탱크		2 EA					
		바닥포장		1 식					
		상수도		1 식					
4		휴게실		24.19M2			속초시 영랑해안길 47(영랑동)		
		휴게실		5.25M2					
		가추		7.08M2					
		장비 건조대		1EA					
		장비 건조대		1EA					
		장비 건조대	파이프기둥/그물 (0.70×2.10)	1EA					

보 상 계 획 공 고

속초시에서 시행하는 「노학2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 열람하시고, 토지조서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7일

속 초 시 장

1. 사업시행자 : 속초시장
2. 사업명 : 노학2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 사업개요
 - 위치 : 속초시 교동 796-60번지 일원(삼환APT 앞)
 - 사업내용 : 도로 1차로 확장 L=375m, 보강토옹벽 L=217m, SoilNailing 489공 등
4. 보상대상 토지내역 : 붙임 토지조서와 같음
5.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5. 11. 27 ~ 2015. 12. 12
6. 열람 및 손실보상협의장소
속초시 안전방재과 방재팀 (☎ 033-639-2403)
7. 보상시기 및 절차 : 2016. 1월 ~ 2016년 2월 보상협의 예정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추후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8.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의거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단, 같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 → (협의불성립시) 공탁

9. 본 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기타 보상업무 관련 문의는 속초시 안전방재과 방재팀(☎ 033-639-240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 신 청 서

1.제 목	노학2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토지소유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 . . .</p> <p>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속초시장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명:노학2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단위:M2)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1-1	교동	산236-49	임야	557	지분 18분의 3	임야	심증식	강원도 속초시 밤골1길 6(교동)			
1-2					지분 36분의 3	임야	심증무	강원도 속초시 소평로 162, 304동 1303호(조양동, 부영아파트)			
1-3					지분 36분의 3	임야	심증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박달동)			
1-4					지분 18분의 2	임야	심증애	강원도영월군영월읍남중 골길14			
1-5					지분 18분의 2	임야	심증무	강원도 속초시 소평로 162, 304동 1303호(조양동, 부영아파트)			
1-6					지분 18분의 2	임야	심증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박달동)			
1-7					지분 18분의 2	임야	심경남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 448동 105호(개포동, 주공아파트)			
1-8					지분 18분의 2	임야	심금남	강원도영월군영월읍남중 골길14			
1-9					지분 18분의 2	임야	심증녀	경기도 의왕시 내손중앙8길 39(내손동)			
2-1	교동	산236-50	임야	38	지분 18분의 3	임야	심증식	강원도 속초시 밤골1길 6(교동)			
2-2					지분 36분의 3	임야	심증무	강원도 속초시 소평로 162, 304동 1303호(조양동, 부영아파트)			
2-3					지분 36분의 3	임야	심증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박달동)			
2-4					지분 18분의 2	임야	심증애	강원도영월군영월읍남중 골길14			
2-5					지분 18분의 2	임야	심증무	강원도 속초시 소평로 162, 304동 1303호(조양동, 부영아파트)			
2-6					지분 18분의 2	임야	심증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박달동)			
2-7					지분 18분의 2	임야	심경남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 448동 105호(개포동, 주공아파트)			
2-8					지분 18분의 2	임야	심금남	강원도영월군영월읍남중 골길14			
2-9					지분 18분의 2	임야	심증녀	경기도 의왕시 내손중앙8길 39(내손동)			
3-1	교동	산236-35	도로	37	지분 18분의 3	도로	심증식	강원도 속초시 밤골1길 6(교동)			

3-2					지분 36분의 3	도로	심증무	강원도 속초시 소평로 162, 304동 1303호(조양동, 부영아파트)			
3-3					지분 36분의 3	도로	심증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박달동)			
3-4					지분 18분의 2	도로	심증애	강원도영월군영월읍남중 골길14			
3-5					지분 18분의 2	도로	심증무	강원도 속초시 소평로 162, 304동 1303호(조양동, 부영아파트)			
3-6					지분 18분의 2	도로	심증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박달동)			
3-7					지분 18분의 2	도로	심경남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 448동 105호(개포동, 주공아파트)			
3-8					지분 18분의 2	도로	심금남	강원도영월군영월읍남중 골길14			
3-9					지분 18분의 2	도로	심증녀	경기도 의왕시 내손중앙8길 39(내손동)			
4	교통	산307-23	임야	677	677	임야	박정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73번길 55, 101동 1905호(석수동, 대주파크빌)			
5	교통	산307-19	임야	165	165	임야	박정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73번길 55, 101동 1905호(석수동, 대주파크빌)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 사망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27.

속 초 시 장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5. 11. 27. ~ 2015. 12. 11. (14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직권말소일 : 2015. 11. 26.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이창호
	주 소 (대장상주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503-6번지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의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위치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503-6번지
	건축물 현 황	1층 벽돌조 학습소 39.15㎡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축디자인과(☎033-639-2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